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아이사랑 적립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7 년 7 월 3 일
3. 주요정정사유:
 - 클린클래스(C-P1, C-P2, S-P, Cw, AG, CG Class) 추가
 - Ce 클래스 판매 보수인하(1000 분의 10→1000 분의 5)
 -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이내’ 문구 추가)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부과여부: <u>환매수수료 징구</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부과여부:<삭제> 종류: <u>Class C-P1(연금저축)</u> 수익자자격: <u>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u> 종류: <u>Class C-P2(퇴직연금)</u> 수익자자격: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u> 종류: <u>Class S-P</u> 수익자자격: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종류: <u>Class Cw</u> 수익자자격: <u>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u>

	<p><신설></p> <p><신설></p>	<p><u>신탁업자</u></p> <p><u>종류: Class AG</u> <u>수익자자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 수수료 징구)</u></p> <p><u>종류: Class CG</u> <u>수익자자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C1 수익증권 3. Class C2 수익증권 4. Class C3 수익증권 5. Class C4 수익증권 6. Class C5 수익증권 7. Class Ce 수익증권 8. Class Ci 수익증권 9. Class S 수익증권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C1 수익증권 3. Class C2 수익증권 4. Class C3 수익증권 5. Class C4 수익증권 6. Class C5 수익증권 7. Class Ce 수익증권 8. Class Ci 수익증권 9. Class S 수익증권 10. <u>Class C-P1 수익증권</u> 11. <u>Class C-P2 수익증권</u> 12. <u>Class S-P 수익증권</u> 13. <u>Class Cw 수익증권</u> 14. <u>Class AG 수익증권</u> 15. <u>Class CG 수익증권</u>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1.(생략) 2.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1.(현행과 같음) 2.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

	<p>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어음"이라 한다)</p> <p>4.~8. (생략)</p>	<p>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u>취득 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어음"이라 한다)</u></p> <p>4.~8.(현행과 같음)</p>
<p>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p>	<p>① (본문 생략)</p> <p>1.~2. (본문 생략)</p> <p>가.(생략)</p> <p>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u>]</p> <p>(2)~(4) (생략)</p> <p>(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p> <p>(6) (생략)</p> <p><신설></p> <p>1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12. (생략)</p> <p>13.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가.(현행과 같음)</p> <p>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u>]</p> <p>(2)~(4) (현행과 동일)</p> <p>(5)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p> <p>(6) (현행과 동일)</p> <p>(7) <u>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p> <p>11.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12. (현행과 같음)</p> <p>13.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생략)</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9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③(생략)</p> <p><신설></p>	<p>①(현행과 같음)</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7호, <u>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내지제7호, 제10호내지제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p> <p>③(현행과 같음)</p> <p><u>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 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u></p>
제23조(운용해위 감시 의무 등)	<p>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의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p>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u>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 이 적정한지 여부</u>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의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u>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u> 7. <u>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24조의 2(수익증권의 판매기준)	<p>1.~9.(생략)</p> <p><신설></p> <p><신설></p>	<p>1.~9.(현행과 같음)</p> <p><u>10. Class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u></p> <p><u>11. Class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u></p> <p>12. <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13. <u>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u></p> <p>14. <u>Class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 수수료 징구)</u></p> <p>15. <u>Class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u></p>
<p>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p>	<p>①~④(생략)</p> <p>⑤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④(생략)</p> <p>⑤ <삭제></p>
<p>제33조(이익분배)</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p> <p><신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당해 종류 수익증권별</u>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u></p>

		<p>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p> <p>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p>
제39조(보수)	<p>Class Ce</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7. Class Ce</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p> <p>10. Class C-P1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p> <p>11. Class C-P2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p> <p>12. Class S-P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8)</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p> <p>13. Class Cw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p> <p>14. Class AG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p>

	<p><신설></p>	<p><u>15. Class CG 수익증권</u> 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0)</u> 나. <u>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5)</u> 다. <u>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u> 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u></p>
<p>제40조(판매수수료)</p>	<p>② 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1% 2. Class C1 : 해당사항 없음 3. Class C2 : 해당사항 없음 4. Class C3 : 해당사항 없음 5. Class C4 : 해당사항 없음 6. Class C5 : 해당사항 없음 7. Class Ce : 해당사항 없음 8. Class Ci : 해당사항 없음 9. Class S : 해당사항 없음 <p><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신설></p> <p>⑥ 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5 항 1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p>② 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1% <u>이내</u> 2. Class C1 : 해당사항 없음 3. Class C2 : 해당사항 없음 4. Class C3 : 해당사항 없음 5. Class C4 : 해당사항 없음 6. Class C5 : 해당사항 없음 7. Class Ce : 해당사항 없음 8. Class Ci : 해당사항 없음 9. Class S : 해당사항 없음 10. <u>Class C-P1</u> : 해당사항 없음 11. <u>Class C-P2</u> : 해당사항 없음 12. <u>Class S-P</u> : 해당사항 없음 13. <u>Class Cw</u> : 해당사항 없음 14. <u>Class AG</u> : <u>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0.5% 이내</u> 15. <u>Class CG</u> : 해당사항 없음 <p>⑥ <u>제 2 항의 선취판매수수료 및 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3 항 및 제 5 항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u></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p> <p>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p>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u>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③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삭제></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제 50 조(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등)	<p>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협회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4 조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협회는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C-P1(연금저축)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 C-P1(연금저축)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부칙	-	<p>(변경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아이사랑 적립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7 년 7 월 3 일
3. 주요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C-P1, C-P2, S-P, Cw, AG, CG Class)
 - Ce 클래스 판매 보수인하(1%→0.5%)
 -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이내' 문구 추가)
 - 환매수수료 삭제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13.46% → 12.65%, 3 등급 유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판매수수료] Class A : 납입금액의 1% [판매보수] Class Ce : 1.0(연, %)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판매수수료] Class A : 납입금액의 1% <u>이내</u> [판매보수] Class Ce : <u>0.50</u> (연, %)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추이	-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
제1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사항> 종류 및 가입자격 <신설>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사항> 종류 및 가입자격 <u>Class C-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u>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 Class A1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p> <p><신설></p>	<p><u>Class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u></p> <p><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u>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u></p> <p><u>Class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u></p> <p><u>Class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u></p> <p><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 Class A1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u>이내</u></p> <p><u>클래스: Class AG</u>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u>이내</u></p>
제2부.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②채권 -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②채권 -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신설>

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제한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4) 생략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생략

7) <신설>

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 등급이 "가. 투자대상의 ②채권 및 ④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2) 동일종목 투자제한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4) 현행과 같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현행과 같음

7)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p>(3)~(4) (생략)</p> <p>(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다) (생략)</p> <p>(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바) (생략)</p> <p>(6) (생략)</p> <p>(7) 금전의 차입 (가) (생략)</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생략)</p>	<p><u>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p> <p>(3)~(4) (현행과 같음)</p> <p>(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다) (현행과 같음)</p> <p>(라)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마)~(바)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금전의 차입 (가) (생략)</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u>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다) (생략)</p>
<p>제 2 부. 10.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u>13.46%</u>로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u>12.65%</u>로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제 2 부. 11. (4)종류별 모집제한</p>	<p>가. 매입</p> <p>(4)종류별 모집제한 종류 및 가입자격</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가. 매입</p> <p>(4)종류별 모집제한 종류 및 가입자격</p> <p><u>Class C-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u></p> <p><u>Class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 연금 가입자</u></p> <p><u>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주 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p>	<p><u>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u></p> <p><u>Class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 수수료 징구)</u></p> <p><u>Class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u></p> <p>나. 환매 (3) 환매수수료 <u>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u></p>
<p>제 2 부.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1%</p> <p><신설></p> <p>[환매수수료]</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p>	<p>가. 투자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1% <u>이내</u></p> <p>Class AG: 납입금액의 0.5% 이내 Class C-P1, C-P2, S-P, Cw, CG: 없음</p> <p><삭제></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p>

	<p>Class Ce : 판매(1.0%)</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Class Ce : <u>판매(0.50%)</u></p> <p>Class C-P1: <u>운용(0.6%), 판매(0.6%), 신탁(0.03%), 사무(0.017%)</u></p> <p>Class C-P2: <u>운용(0.6%), 판매(0.45%), 신탁(0.03%), 사무(0.017%)</u></p> <p>Class S-P: <u>운용(0.6%), 판매(0.18%), 신탁(0.03%), 사무(0.017%)</u></p> <p>Class Cw: <u>운용(0.6%), 판매(0%), 신탁(0.03%), 사무(0.017%)</u></p> <p>Class AG: <u>운용(0.6%), 판매(0.22%), 신탁(0.03%), 사무(0.017%)</u></p> <p>Class CG: <u>운용(0.6%), 판매(0.55%), 신탁(0.03%), 사무(0.017%)</u></p> <p><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Class C-P1, C-P2, S-P, Cw, AG, CG 추가</p>
<p>제2부.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가. 이익 배분</p> <p>(1)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u></p> <p><신설></p>	<p>가. 이익 배분</p> <p>(1)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u></p> <p>-<u>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u></p> <p>-<u>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u></p> <p><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7년 7월 3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p>

	<p>나. 과세</p> <p><신설></p> <p><신설></p>	<p>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나. 과세</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첨부 1></p> <p>(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첨부 2></p>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u>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u>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u>작성일 기준 업데이트</u>
제5부.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p>가. 투자자총회 등</p> <p>(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p> <p>(1)~(2) (생략)</p> <p><신설></p>	<p>가. 투자자총회 등</p> <p>(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p> <p>(1)~(2) (현행과 같음)</p> <p>(2)- 1.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p>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p>가. 정기보고서</p> <p>(2) 자산운용보고서</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p>	<p>가. 정기보고서</p> <p>(2) 자산운용보고서</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p>

	<p>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이하 생략)</p>	<p>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현행과 같음)</p>
제5부.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첨부 1>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세액공제	<p>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첨부 2>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아이사랑 적립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7 년 7 월 3 일
3. 주요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C-P1, C-P2, S-P, Cw, AG, CG Class)
 - Ce 클래스 판매 보수인하(1%→0.5%)
 -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이내' 문구 추가)
 - 환매수수료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 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판매보수] Class Ce : 1.0%(연, %)	[판매보수] Class Ce : <u>0.50</u> (연, %)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추이	-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